

##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공개지침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(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호의 ‘공문서’를 말한다)의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보공개책임자 지정 및 역할 등)** ①개발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, 과·단별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과·단장을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.  
②정보공개책임자는 원활한 정보공개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업무총괄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**제3조(공개여부 표시)** 사무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기안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당해 문서의 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, 결재자가 이를 최종 확인한다.

**제4조(정보목록의 작성)** 개발원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정보목록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### 제2장 정보공개절차

**제5조(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)**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, 접수한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
2. 우편·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

②운영지원과에서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을 관련 정보 소관 과·단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정보공개결정통보 등)** ① 운영지원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소관 과·단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소관 과·단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 기간 연장사유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하며, 운영지원과장은 법 제11조에 의한 정보공개결정 기한인 정보공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때 연장 기한은 당초 공개 결정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**제7조(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)** ①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공개방법)**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·복제물의 교부 또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송 등에 의한다.

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.

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**제9조(정보공개일시)** 정보공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·복제물을 교부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비용부담)** ① 정보공개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되,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 ~ 100%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②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이때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.

**제11조(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)**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·결과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보칙)** ①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②개발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른다.

③이 지침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 시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##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

<b>법제9조제1항 제1호</b>	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. (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)</li><li>2.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</li><li>3.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</li></ol>	
<b>법제9조제1항 제2호</b>	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대통령·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</li><li>2. 을지연습, 비밀취급인가자 명단, 대 테러대비 전략, 보안업무 관련 비밀문서 등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</li><li>3.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 테러 등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</li><li>4.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</li></ol>	
<b>법제9조제1항 제3호</b>	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<b>법제9조제1항 제4호</b>	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</li> <li>2.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</li> <li>3. 범죄와 형벌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</li> </ol>	

<b>법제9조제1항 제5호</b>	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내부 감사계획, 대외 평가관련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</li> <li>2. 감사 관련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, 개인 징계 처분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, 내부 부조리 신고 등의 신고 및 처리서류, 각종 사고처리 관련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</li> <li>3.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</li> <li>4. 정책결정·제도수립·기술개발·사업 추진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·진단·승인·심사·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·지표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</li> <li>나.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</li> <li>다.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</li> </ol> </li> <li>5. 인사·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, 직제관리, 직원의 임용, 인사교류,</li> </ol>	

교육훈련, 승진, 성과평가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·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6. 직원의 채용 전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,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면접 위원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채용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7. 이사회·임원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나 회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
  - 가.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
  - 나.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  - 다.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  - 라. 위원회나 회의의 의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이나 인적사항
  - 마. 기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
8. 관계 부처, 기관 등과의 협약·계약이나 협의 또는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(공개할 경우 관계부처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)
9. 내부검토나 의견수렴,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10. 직원이 자체 연구·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
11.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,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
**법제9조제1항 제6호**
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

다만, 다음에 열거한 경우는 제외함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</li> <li>2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</li> <li>3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</li> <li>4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</li> <li>5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</li> </ol>
--	--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민원제기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하되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</li> <li>2. 특정 직원의 집 주소·집 전화번호·학력·주민등록번호·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(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</li> <li>3. 인사교류신청, 공모후보자 인적사항, 채용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 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 확인, 비위·진정 등에 대한 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(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</li> <li>4. 직원 채용시험 등 시험원서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 개인의 성적·학력·주소 등 정보</li> <li>5. 위원회 운영, 유공자 포상,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</li> <li>6. 그 밖에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</li> </ol>	
---	--

<p><b>법제9조제1항 제7호</b></p>	<p>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	<p>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</li> <li>2. 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</li> </ol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제출 업체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</li> <li>2.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</li> <li>3. 개발원의 경영·업무추진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발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</li> </ol>	
<p><b>법제9조제1항 제8호</b></p>	<p>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관이전이나 정책·제도·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li> </ol>	



[별지 서식]

## 정보공개처리대장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청구인	청구사항		결 정 내 용					처리사항		비 고
			정보 내용	공개 형태	담당 부서	결정 구분	공개 내용	비/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	결정 통지 일자	공개 일자	공개 방법	

< 기재요령 >

1. "정보내용" 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
2. "공개형태" 는 열람·시청, 사본·출력물, 전자파일, 복제·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
3. "결정구분" 은 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 등 결정 사항을 기재
4. "공개내용" 은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
5. "비/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" 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기재하고 비/부분공개 사유를 기재
6. "공개방법" 은 열람(장소)·시청(장소)·우편·모사전송·정보통신망 발송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
7. "비고" 항목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